

## 증권임치계약서

주식 보유자 \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 보관자 HSIS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주식보관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게 보관을 맡기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치”란 ‘회사’가 ‘갑’로부터 증권을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며 관리하는 업무 수행을 말한다.
2. “임치수수료”란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증권을 임치하는 조건으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3. “임치증권”이란 ‘회사’의 임치계좌에 임치가 실행된 증권을 말한다.
4.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대상은 증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말하며, 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 제 3 조 (대차증개서비스의 대상증권)

임치의 대상 증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 상장된 증권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1항, 제2항 이외의 비상장 주식 증권

### 제 4 조(임치료)

1. ‘갑’은 ‘회사’의 보관에 대하여 ‘임치수수료’로서 임치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에 1주당 일금 1원의 협의수수료를 선불로 지급하며, 이 기간에 대한 만기는 무기한으로 한다.
2. 제1항의 임치료는 주식의 수량에 따라 1주당 임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임치’한 ‘임치증권’을 출고 후 재임치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치계약을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신의성실)

1. ‘회사’는 ‘갑’의 주식의 보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한다.
2. ‘회사’는 ‘갑’의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갑’이 임치중인 주식을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할 수 없다. 단 주주들의 허락을 받아 당시 현재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블록딜로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가와 장외 블록딜 가격의 제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 80%는 임치한 주주가, 20%는 ‘회사’가 나누어 가진다.
3. ‘회사’는 ‘갑’이 요구하는 경우 임치중인 ‘임치증권’을 즉시 증권사 영업시간내에 ‘갑’에게 반환하고, 위 계약을 종료한다. 요구한 순서에 따라 주식을 지체없이 반환하며 증권사 영업시간 종료시 그 다음날로 이연한다.
4. 회사는 ‘갑’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갑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특별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갑’이 ‘회사’의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치수수료를 입금하는 때부터 계약이 시작된다.
2. 실제 주식을 임치하는 시점은 ‘갑’이 지정하며, 장외 블록딜이나 주주총회시 갑의 의사에 따라 임치하면 된다. 임치전까지 각각의 주식계좌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3. ‘갑’은 언제든지 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임치중인 ‘임치증권’을 즉시 ‘갑’에게 ‘반환, 인도 또는 지급’ 하고 위 계약을 종료한다.

### 제7조 (권리의 처리)

① ‘회사’는 ‘갑’이 임치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증자 등의 권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등: ‘회사’는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에 대하여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 일체를 ‘갑’에게 지급한다.
2. 주식배당 및 무상주: ‘회사’는 신주의 상장일에 해당 임치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임치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단, 이로인해 발생한 세금은 ‘갑’이 부담한다. ‘갑’이 요청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반환한다.
3.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갑’은 청약의사를 ‘회사’에

게 밝히고 대급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청약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실권의사를 밝힌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한 ‘갑’의 주식은 ‘갑’에게 귀속된다.

4. 감자 및 합병 등: 해당주식의 상장일에 ‘갑’에게 지급하며, 그 외 권리는 한국결제예탁원 규정에 따른다.

② 매수청구 및 의결권 경우 임치계약을 체결한 주권에 대해서는 ‘갑’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회사가 1인 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단, ‘갑’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3 영업일 이전에 계약종료신청을 하고, 매수청구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계약종료신청 해야 한다.

### 제8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련하여 ‘갑’과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얻은 고객정보 및 업무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임치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치수수료를 지급한 주주에 한하여 계약수량내에서 장외블록딜을 진행하며, 블록딜시 별도의 비용은 없다.
2. 임치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치수수료를 지급한 주주는 장외블록딜이나 주주총회시 며칠간의 임치기간을 제외하고는 각자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3. 처음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수량에 대해 임치수수료를 납입한 주주가 출고요청으로 임치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총이나 블록딜로 인해 재임치가 필요할 때 동일수량 내에서 재임치 수수료를 주당 1원으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4. 임치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제로 주식까지 임치한 주주들에게는 회사의 임치계좌의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임치를 한 주주들이 실시간으로 계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치수수료를 납입한 주주들은 회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

판에 질문과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답변하고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6.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치료를 납입한 주주의 경우 실제로 주식을 HSIS 계좌로 임치하기 전이라도 별도의 절차와 양식없이 개별주주별로 의결권을 HSIS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HSIS는 소액주주 연대의 대표로서 주주제안이나 공개주주서한 발송 등 소액주주활동을 소액주주를 대표해서 한다. 실제로 주총에서 표대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HSIS는 소액주주들이 HSIS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임치하는 시점부터 HSIS에 임치한 모든 주식에 대해 단일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의 권한을 갖는다.

### 제11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4. 이 계약서는 전자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5. 임치계약을 원하는 화승인더 주주는 회사 홈페이지(www.hsis.co.kr)의 ‘임치방법’ 게시판을 통해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전자계약서를 발송한다.
6. 임치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자 하면 주식출고 신청을 홈페이지의 ‘임치방법’ 게시판이나 회사에 전화(031-8043-1084)로 신청한다.
7. 주식소유자 정의와 임치료 납입 계좌의 정의는 동일해야 한다.

제12조 (계약내용)

‘회사’ 와 ‘갑’ 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권임치계약을 체결한다.

임치주식명: 화승인더(006060)

임치주식수: \_\_\_\_\_ 주                      임치수수료: \_\_\_\_\_ 원

‘회사’ 의 수수료 수취 계좌: 국민 422001-04-265152

‘갑’ 의 증권회사명: \_\_\_\_\_                      ‘갑’ 의 증권계좌번호: \_\_\_\_\_

‘회사’ 의 증권회사명: 한화투자증권                      ‘회사’ 의 증권계좌번호: 501-060557-11

‘갑’ 은 위의 계약에 따라 ‘회사’ 의 증권계좌(한화투자 501-060557-11)로 주식을 임치하고, ‘회사’ 의 수수료 수취 계좌(국민 422001-04-265152)에 임치수수료를 납부한다.

(회사) HSIS 주식회사  (인)

(갑) 주식 보유자 : \_\_\_\_\_ (인)

HSIS주식회사